

月間協會動靜

1976年度 第1回 編纂委員會

제 6회 윤리위원회

일시: 1975. 12. 26(금) 15:00
장소: 회의실(본회)

- 참석위원: 양 경 식
 윤 기 병
 장 기 인
 선 병 택
 한 광 수
 강 진 삼

심의요청사항

1. 징계(회원 자격정지 6월)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심의
2. 타, 건축사가 설계한 사실을 알면서 설계한 행위건 심의
3. 명의 대여 행위건 심의

제 1회 定期理事会

일시: 1976年1月 8日(목) 14:00
장소: 본협 회의실

- 출 석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 성 규
이 사 이 홍 수
이 사 성 일 영
이 사 김 진 성
- 참 석
감 사 윤 희 준
감 사 박 래 운
서울시지부장 이 봉 노

부의안건

1. 각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의건
2. 충남지부 온양 분소 및 장항분소 설치 승인의건
3. 윤리위 필정 사항 수락의건
4. 직원(출판부 소속 2명) 채용 및 직원 승진의건
5. 본부 직원 및 각시도 지부 사무국장 호봉결정의건
6. 실적회비 산출 기준 제정의건
7. 전북지부 임원취임 승인의건
8. 기타 사항

일 시: 1976. 1. 15. 16:00
장 소: 본회 회의실

- 출석: 위원장 이 홍 수
 위 원 김 진 일
 " 김 인 석
 " 유 경 철
 " 윤 도 근
 " 이 문 보
 " 김 한 근

토의안건:

1. 전월호 합평
2. 1월호 편집계획안 토의
3. 기타사항

國務總理指示第16号에 對한 陳情

技術用役業體의 重點育成策의 一環으로 政府에서는 75年 11月 13日 國務總理指示 第16号를 傘下에 示達하여 政府의 各部處 政府傘下機關 地方自治團體에서 發注하는 用役費 5百萬元以上의 土木建設分野 및 化工分野의 技術用役은 韓國 綜合技術開發公社 및 코리아엔지니어링에 各各 委囑하도록 指示함을 계기로 政府의 一部 部處에서는 이같은 國務總理指示를 擴大解釋 用役費 500萬元 以上의 建築設計分野의 用役도 同總理指示와 關聯시켜 우리회원에게 用役發注하는것을 拒否하는 事態를 惹起함으로써 會員業務活動에 莫大한 支障은 招來하고 있음으로 本協會에서는 別途揭載한 바와 같은 陳情書를 靑瓦台 國務總理室등 關係要路에 提出하는 한便(76. 1. 19)

1月21日에는 李圭福會長이 國務總理室 關係官을 訪하고 陳情의 要旨를 說明하는 同時 早速한 是正策을 강구해 주도록 要請하고 아울러 建設部 關係官 들에게도 協助를 要請하였는바 關係當局의 反應으로 보아 本協會에서 陳情한 內容에 立脚한 是正措置가 곧 이루어 질것으로 予想된다.

建築法施行令(案)에 對한 公聽會

지난해 定期國會에서 建築法改正法律이 通過되고 이어 政府에서 이를 公布함에 따라 建設部에서는 그間 建築法 施行令 改正 作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本協會 會議室에서 建設部 關係官 本協會 任員 其他 關係團體人士등이 모여 이 施行令案에 對한 公聽會가 開催되었다.

本協會에서는 이와같은 1連의 움직임에 對處 建築法施行令에 垜地境界線 問題등 論理의 焦點이 되고 있는 部分이 合理的으로 그리고 現實에 알맞게 規定되도록 各種資料와 協會意見을 提出하는등 多角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